

일본에서 처음으로 주민표를 작성하신
오오타구로 이사오신

} 외국 국적
구민 여러분께

여러분의 거주지로 저희 오오타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오늘 날짜로 귀하의 주민표가 기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주민표는, 귀하께서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적인 증명서입니다.

일본에서는, 이사하실 때 「전출신고」 및 「전입신고」, 또는 「전이신고」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.

1. 일본 국내에서 이사하시는 경우의 수속 안내

A. 전출신고

오오타구에서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전출신고가 필요하며, 이사에정일로부터 약 14 일전부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B. 전입신고

다른 시구정촌에서 오오타구로 이사오신 경우는 오오타구에, 오오타구로부터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가신 경우는 그 시구정촌에 신고하시는 것으로, 이사하신 후 14 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 이사 전에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.

또한 「전입신고」는, 「전출신고」를 하신 후에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반드시 「전출신고」, 「전입신고」의 순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C. 전이신고

오오타구내에서 이사하신 경우에 신고하시는 것으로, 이사하신 후 14 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 이사 전에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.

D. 신고가 지체된 경우

위의 신고는 모두, 이사 후 14 일을 지난 후에도 신고하실 수는 있으나, 전입신고 및 전이신고가 지체된 경우는, 추가로 「제출기간 경과통지서」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이 경우, 나중에 간이재판소가 5 만엔 이하의 과료 (행정벌) 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주소가 정해졌으면 신속하게 해당 시구정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출국하시는 경우의 수속 안내

A. 재입국 허가 취득 후의 장기간 출국, 또는 일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실 때

출국 또는 귀국하시기 전에 「국외전출신고」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「국외전출신고」 하지 않으신 채 출국 또는 귀국하신 경우, 우편으로 「국외전출신고」하실 수 있습니다.

또한, 「국외전출신고」 하는 것을 잊으신 상태에서 일본으로 재입국하시는 경우, 제출하지 않았던 「국외전출신고」의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

B. 여행 등의 목적으로, 재입국 허가 취득 후에 단기간 출국하시는 경우

생활 본거지가 일본이신 경우는, 「국외전출신고」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「국외전출신고」하지 않는 경우, 일본의 주민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.